

정 관



KOREA
LACROSSE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라크로스협회 정관

제 정 2006. 7. 27
1차 개정 2020. 6. 2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라크로스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Lacrosse Association"(약칭 KLA)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라크로스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 향상에 이바지하며 건전하고 명량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라크로스인 및 관련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라크로스인 양성을 통한 국위선양 도모 및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라크로스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2. 라크로스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국제 라크로스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국내 라크로스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5. 지부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
6. 라크로스 교육내용의 개발
7. 지도자 육성 및 선수의 양성
8. 라크로스 기술의 연구 및 향상에 관한 사업
9. 라크로스 시설 및 용품·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10. 라크로스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11. 라크로스의 홍보 및 계몽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후원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 법인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재정이나 재능

을 통해 법인에 기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2.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
3.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 제공 및 법인 운영자료 열람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8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하(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규칙 제 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상임이사) ①본 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유고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이 지정한 자가 없거나 회장과 지정한 자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 및 부회장 전원이 유고되었을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의결권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하여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39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법인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위원회 등 조직운영)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각종 위원회 등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 한국라크로스협회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모든 권리와 의무관계는 본회 정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가 승계한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선임임원은 별지 1와 같으며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으로 본다.

제4조 (법인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별지 2에 기명날인한다.

제5조 (회원) 최초설립해의 일반회원은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로 한다.

부 칙(제1차 개정:2020. 6.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6. 29

회 장 조 동 혁 (인)

이 사 박 주 태 (인)

이 사 권 준 일 (인)

이 사 박 원 재 (인)